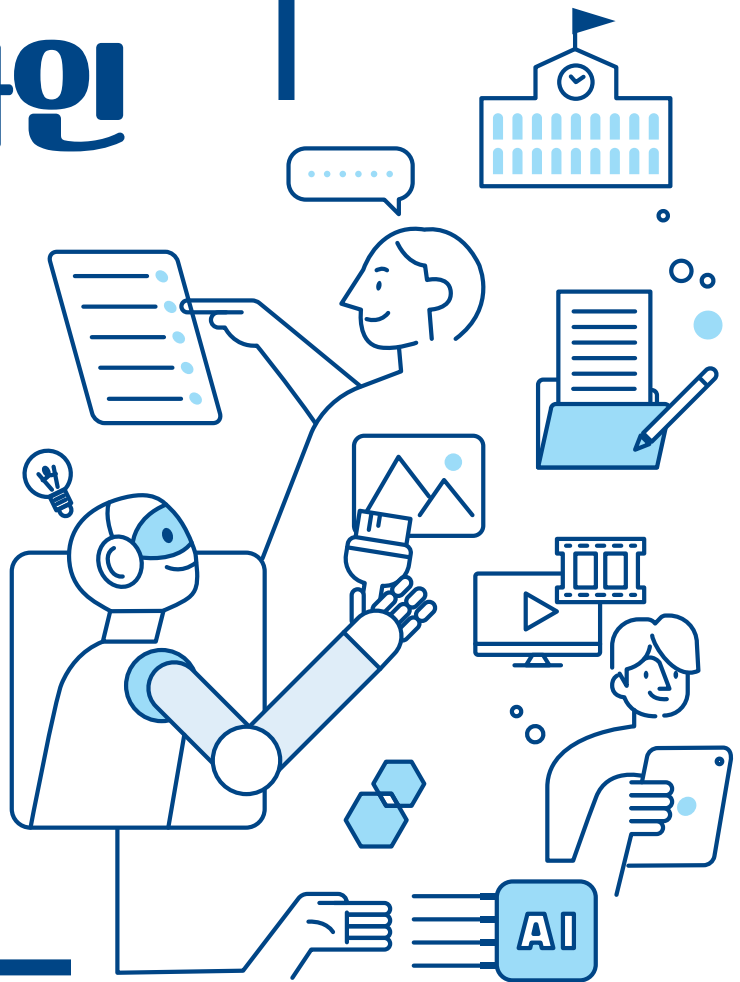


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 저작권 가이드라인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라인**

##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소개

교육저작권지원센터는 교육기관의 저작권 고충 지원과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에 의해 2017년 설립된 교육기관 전담 지원기관으로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는 학교 수업을 위해 저작권 법·제도 안내뿐만 아니라, 저작권 분쟁 상담, 저작권 교육자료 제공, 안심폰트와 폰트점검프로그램 배포,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과 저작권 전문가 양성 연수, 법제도 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보 및 자료는 누리집(copyright.keris.or.kr)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은 누리집 온라인 상담 채널 및 상담전화 창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누리집      copyright.keris.or.kr
- 상담전화    ☎ 053-714-0202



## 제작 배경

우리는 '생성형 AI'를 통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많은 것을 체험하고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AI의 특성은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아 앞으로 그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롬프트를 통해 아이디어만 입력해도 소설, 그림, 영상, 작곡, 음원 등을 쉽고 빠르게 제작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작된 생성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는 인간과 이에 준하는 법인·단체가 창작한 창작물에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를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AI 생성물을 인쇄 및 인터넷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생성형 AI 이용 시의 저작권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기관 AI 활용 저작권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AI 생성물 이용과 저작권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본 내용은 생성형 AI 이용 시의 저작권 이해를 위한 자료로 법원의 해석과 다를 수 있으며, 저작권 분쟁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구체적 확인을 통해 법원이 판단함을 알립니다. 또한 이후 법률 제·개정이나 새로운 판결 또는 AI 기술 변화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CONTENTS



## I

### 참고 가기

05

1. 생성형 AI (Generative AI)
2. 저작권과 이용 약관

## II

###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원칙

11

1. AI 순수 생성물
2. 사용자의 창작성을 가미한 AI 생성물
3.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한 AI 생성물
4. 공모전 출품을 위해 제작된 AI 생성물

## III

### AI 활용 수업 사례

28

1. 텍스트 생성형 AI (Text Generative AI) 활용 수업
2. 이미지 생성형 AI (Image Generative AI) 활용 수업

## IV

### AI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저작권 FAQ

37

1. AI가 창작한 생성물은 저작권이 있나요?
2. AI 생성물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될까요?
3. 개인에게 허용된 AI를 수업시간에 사용해도 되나요?
4. 연구대회 또는 공모전 등에 AI 생성물을 출품할 수 있나요?
5. AI 생성물 이용 시, 출처표시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6. AI 서비스 멤버십 구독 여부에 따라, 귀속되는 권리가 다른가요?
7. 학생(아동)은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나요?

Chapter

# I

**짚고 가기**

## 생성형 AI란?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인간이 만든 것처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주어진 입력(프롬프트)에 따라 스스로 텍스트나 이미지, 영상, 코드 등을 새롭게 작성할 수 있고 작곡 및 연주도 가능합니다.

생성형 AI의 종류 및 대표적 서비스로는 텍스트 생성 AI(ChatGPT 등), 이미지 생성 AI(MidJourney 등), 오디오 및 음악 생성 AI(Suno 등), 비디오 생성 AI(RunwayML 등), 코딩 생성 AI(GitHub Copilot 등), 3D 모델 생성 AI(GANverse3D 등) 이외에도 데이터 생성 AI와 게임 및 가상 세계 생성 AI 등이 있습니다.

\* TXT : 텍스트, IMG : 이미지, VID :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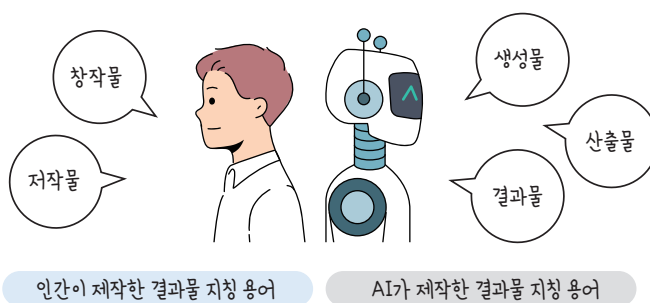
| AI Model                                                                                             | INPUT |     |     | OUTPUT |     |     |
|------------------------------------------------------------------------------------------------------|-------|-----|-----|--------|-----|-----|
|                                                                                                      | TXT   | IMG | VID | TXT    | IMG | VID |
|  Claude           | ✓     |     |     | ✓      |     |     |
|  Midjourney       | ✓     |     |     |        | ✓   |     |
|  wrtm.            | ✓     |     |     | ✓      | ✓   |     |
|  ChatGPT-4        | ✓     |     |     | ✓      | ✓   |     |
|  Adobe Firefly    | ✓     | ✓   |     |        | ✓   |     |
|  Canva            | ✓     | ✓   |     |        | ✓   |     |
|  Stable Diffusion | ✓     | ✓   |     |        | ✓   |     |
|  Gemini           | ✓     | ✓   |     | ✓      | ✓   |     |
|  runway Gen-2     | ✓     | ✓   | ✓   |        | ✓   | ✓   |

참고 | 생성형 AI 모델의 입력 및 출력 가능한 콘텐츠

\* 최근에는 생성형 AI의 기능 개선과 서비스 통합 등으로 텍스트 기반의 AI에서도 이미지 생성 기능을 제공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ChatGPT-4와 DALL-E3 기능 통합 등)

## AI 생성물과 저작권

AI를 통해서 만들어 낸 결과물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 저작권법상 창작의 주체는 인간에 국한되므로 ‘AI 창작물’, ‘AI 저작물’이 아닌 ‘AI 산출물’, ‘AI 생성물’ 또는 ‘AI 결과물’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체부 2023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참고」), 본 안내서에서는 ‘AI 생성물’로 용어를 통일합니다.



생성형 AI 이용 시에는 AI 생성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부여되는지, 생성물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제3자의 저작물이 정당하게 이용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생성물의 이용이 AI 서비스 이용 허락(이용 약관) 범위에 있는지 등에 따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료 및 유료 AI 서비스 이용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권 정책과 허용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AI의 생성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AI 서비스의 이용 약관도 충분히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부여한 배타적 권리로, 원칙적으로는 저작물을 창작한 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창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은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까지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점은 재산권만 보호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구분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과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을 포함하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다시 분류됩니다. 이러한 세분화된 권리는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받거나, 양도 없이 허용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 저작권                    |                                                                 | 산업재산권                       | 신지식재산권                                                          |
|------------------------|-----------------------------------------------------------------|-----------------------------|-----------------------------------------------------------------|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                             |                                                                 |
| 공표권<br>성명표시권<br>동일성유지권 | 복제권<br>공연권<br>전시권<br>배포권<br>대여권<br>공중송신권(전송, 방송 등)<br>2차적저작물작성권 | 특허권<br>실용신안권<br>디자인권<br>상표권 | 영업비밀보호권<br>데이터베이스권<br>뉴미디어권<br>반도체배치설계권<br>생명공학기술권<br>디지털콘텐츠권 등 |

그림 | 지식재산권 분류

\*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라도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컴퓨터 프로그램은 예외)

## 이용 약관이란? (license)

이용 약관(license)은 소프트웨어, 콘텐츠, 서비스 또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액세스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 규칙과 조건을 명시한 법적 문서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이용 약관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용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 내용'으로, 양측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사용자가 서비스 사용에 동의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S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도 일반적으로 이용 약관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하는 순간 이용자는 SI서비스와 계약이 성립되어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SI의 생성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약관에 있는 사용 범위와 제한 사항, 소유 및 저작권 양도 약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는 약관 허용 범위 내에서 생성물을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학교 수업목적이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 사용 범위

개인용, 상업용, 비상업적 사용 등의 이용 목적 명시 (무료·유료)



### 제한 사항

재배포, 타인의 저작물 이용 미허용 등의 이용 제한 명시



### 저작권

생성물의 소유권(또는 저작권) 양도, 이용 허락 범위 명시



### 책임 한계

발생 가능한 손해 책임 및 제한 명시



### 개인정보 및 데이터 사용

사용자의 데이터 수집 및 이용 방법 명시



### 분쟁 해결

계약 위반 시 해결 방법과 적용 법률 등을 명시

이용 약관의 주요 내용



Chapter

# II

##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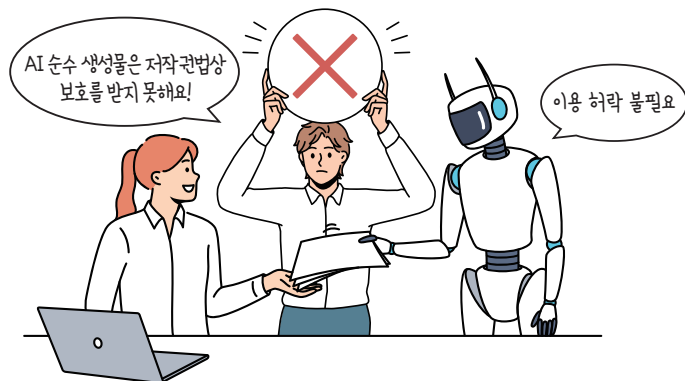
### 질문

학생들에게 ‘인상과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프린트하여 수업시간에 나눠주고자 합니다. 이때 AI가 생성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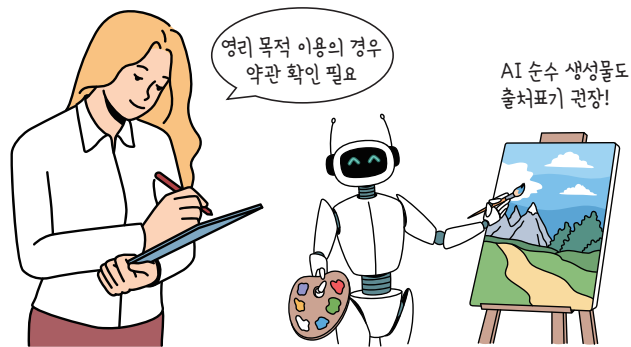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여기서 인간이란 법률상 생물학적인 육체를 가진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은 이러한 ‘인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AI가 창작한 생성물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에,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수업시간에 복제하여 이용하거나 배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AI 생성물은 원천적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않기에 수업 이외의 목적으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수업목적이라면, 저작권법상 보호 받는 저작물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제 25조 제3항)은 수업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그림 등과 같은 일품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자유 이용이 가능한 AI 생성물이라도 창작자 구분이나 윤리적 문제로 인하여 '출처 표기'는 필요합니다. **[참고 2]** 또한 영리 목적의 경우 AI 이용약관에 따라 유료 구독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이용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여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AI 생성물 사례

- ☑ 사용자의 단순 질문에 AI가 답변한 작성 글    예시 출산 감소에 따라 예측되는 사회 문제
- ☑ 사용자 요구에 따라 AI가 생성한 그림    예시 70년대 눈 내리는 광화문 풍경 그림
- ☑ 사용자 제시어 입력에 따라 AI가 작성한 가사, 작곡물    예시 운동회 행진곡

## 【참고 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저작권법 제2조 제1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저작물의 종류

| 종 류        | 설 명                                        |
|------------|--------------------------------------------|
| 어문저작물      | 문자와 구술로 표현된 저작물 (소설·시·수필·논문 등)             |
| 음악저작물      | 가락, 리듬, 화성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소리(音)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 |
| 연극저작물      | 사람의 말 또는 몸짓과 동작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연극·무용·무언극 등)    |
| 미술저작물      | 시각적 미를 형상이나 색채에 의해서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저작물  |
| 건축저작물      | 건축물을 위한 설계도서·건축모형·건축물                      |
| 사진저작물      | 인물이나 풍경 등을 사진기 등에 의하여 평면적으로 표현된 저작물        |
| 영상저작물      |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 기계 또는 전자장치로 재생이 가능한 저작물  |
| 도형저작물      | 어떤 형태나 모양을 표현하는 저작물(지도·도면·도표·설계도·약도·해도 등)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간접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
|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     |

## 【참고 ②】 출처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 표기”란 특정 정보, 자료, 또는 콘텐츠를 사용할 때 그 출처(즉, 해당 자료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명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용한 자료의 원천을 존중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 | 출처 표기의 원칙

원칙적으로 모든 경우 출처 표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라면 저작자와 저작물의 제목은 표시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출처 표기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작자, 저작물의 제호, 발행처 및 발행연월일, 쪽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웹이나 앱에 게시된 저작물은 위치 정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치정보(URL) 및 방문일자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출처 표기 방법

출처 표기는 저작물이 이용된 곳에 각주나 후주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에 이용한 저작물을 간략히 표기한 것만으로는 출처 표기를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과 원저작물 모두의 저작자, 저작물의 제목, 발행사, 발행연도 등의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 출처 표기가 필요한 경우

- 텍스트 : 다른 사람의 글이나 연구 내용을 직접 인용하거나 참조할 때
- 이미지, 사진, 영상 : 다른 사람이 제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사용할 때
- 데이터, 통계 : 보고서, 기사, 연구 등에서 가져온 숫자나 사실
- 아이디어 : 독창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서 차용했을 때

### | 출처 표기에 포함되는 정보

출처를 표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저작명 : 자료를 만든 사람의 이름
- 출판 연도 : 자료가 공개된 연도
- 자료 제목 : 사용한 자료나 콘텐츠의 제목
- 출처 링크 : 온라인 자료인 경우 해당 URL
- 출판사/출처명 : 자료가 어디서 제공되었는지

※ 상위 정보 중 일부는 ‘출처 표기’ 프롬프트에 대한 ‘ChatGPT’ 답변을 참고하여 작성함

### 판례 출처 표기 없는 무단 사용에 따른 ‘표절’ 판단

박사학위논문에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과 소외 일본 저자들의 저서를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사용한 것이 표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저자의 저술에 적절한 인용 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언제나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 표기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명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함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 해고무효확인등

### 질문

AI로 제작한 음원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수업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작곡한 곡을 AI가 재즈 스타일로 연주하여 제작한 음원입니다. 이런 경우도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까요? 보호를 받는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답변

AI 생성물에 사용자의 창작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AI 생성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사용자의 창작물은 분리되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음원의 곡은 사람에 의해 창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③]**

\* 물론 AI가 작곡했다 하더라도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앞의 사례에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AI가 연주한 음원이라도 음원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작곡한 곡이 포함되어 있다면, 곡은 공동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공동저작물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곡의 저작자는 선생님과 아이들이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 곡에 대한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4】** 따라서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공동저작자 전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동저작자들 사이에 공동저작권을 행사할 대표자를 정하고 있는 때에는 대표자의 허락만 받으면 됩니다. 공동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에 따라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는 때에는 공동저작자 전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AI 생성물 사례

- ☑ AI가 생성한 지역 소개자료 일부를 사용하여 작성한 지역탐방 자료집
- ☑ AI가 생성한 삽화 일부를 사용하여 그린 자연보호 포스터
- ☑ AI가 특정 장르로 연주하여 제작한 음원에 포함된 개인의 창작곡
- ☑ AI가 그린 수십 장의 만화 그림을 창작적으로 선택,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

### 【참고 ③】 저작권법 보호를 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창작성’의 의미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창작성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성했다는 의미에서 창작성(originality)입니다. 다른 하나는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의 창조적 개성이 담겨야 한다는 의미에서 창작성(creativity)입니다. 법원 판례나 학설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담기거나 발현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서의 인정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창작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전문 작가의 작품이 아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의 작품도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고 최소한의 창조적 개성을 담고 있는 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성은 저작물이 완성되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완성된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슈베르트의 교향곡은 4개의 악장 중 1, 2악장만 완성되고 3, 4악장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1, 2악장만으로 충분히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판례 저작권법상 보호 받기 위한 창작성 요건

지하철 통신설비 중 화상 전송설비에 대한 제안서 도면이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위 제안서 도면은 기능적 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함.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 저작권법위반

#### 【참고 4】 공동저작물이란 무엇인가요?

공동저작물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각자의 기여분이 분리될 수 있지만 각자의 기여분 중 어느 하나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이용 가치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동저작물이 됩니다. 분리된 각자의 기여분이 각각 하나의 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이용 가치를 갖는 때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악곡과 가사(노랫말)는 분리 이용이 가능하고 독립적인 이용 가치를 갖기 때문에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에 해당합니다.

2인 이상이 참여하여 만든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분리 이용이 불가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분리 이용이 불가능한 저작물을 단일의 저작물을 만들겠다는 공동의 창작 의사(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순차적으로 창작하여 각자의 기여분이 분리 이용이 불가능한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 졌더라도 처음부터 공동의 창작 의사(의도)가 없었다면 공동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여 후행 저작자가 완성한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됩니다.

공동저작물의 창작에 직접 기여한 자만이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가지며, 공동저작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보유합니다.

#### 판례 ‘공동저작물’의 요건인 공동창작의 의사

피해자가 단독으로 32회분의 드라마 극본을 집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1회부터 6회분까지 집필을 완료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계약을 해지하여 나머지 부분이 다른 작가에 의해서 완성되었는데, 이 경우 완성된 극본이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선행 저작자에게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라고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 저작권법위반

##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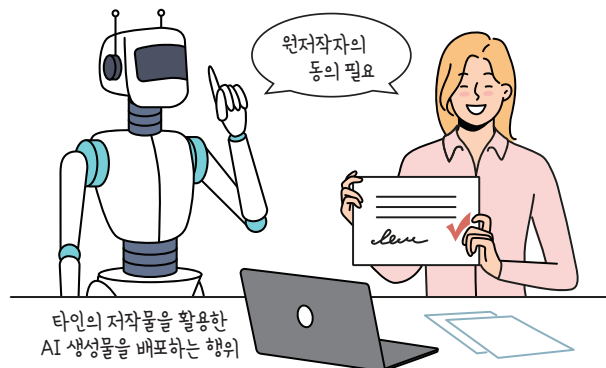
영문 소설을 생성형 AI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윤문하여 수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수업 이후에는 번역 작품을 책으로 만들어 배포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요?

## 답변

영문 소설을 AI로 번역하기 위하여 타인의 영문 소설을 AI에 입력(input)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영문 소설을 허락 없이 AI 서비스 서버에 복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AI에 입력하는 행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ChatGPT’는 이러한 경우를 위해 사용자가 AI에 입력한 저작물을 AI가 모델학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도록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improve the model for everyone)’이라는 데이터 컨트롤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비활성화’한다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글 번역본의 윤문본을 수업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이용(약 10% 이내 범위)할 수 있습니다. **[참고 6]** 하지만 수업이 끝난 후 이를 책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는 수업목적 허용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워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적으로 윤문(潤文)이란 ‘글을 다듬고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AI로 번역한 번역문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번역문을 바탕으로 윤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고친 정도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2차적저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타 등의 단순 수정이 아닌 오역된 부분이나 불분명한 부분을 수정하여 표현을 바꾸거나 그 뜻을 분명히 하는 등 내용의 대폭적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2차적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

- ☑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이라는 데이터 컨트롤을 비활성화하지 않고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외국 소설 등을 AI에 입력하여 한글로 번역하는 행위
- ☑ AI에 입력하여 번역한 번역물을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
- ☑ AI에 제시어를 입력하여 현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과 비슷한 생성물을 만들어 이용하는 행위

### 【참고 ⑤】 수업 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의 이용 범위는?

저작권법은 학교 등의 수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5조 제3항) 이용하는 저작물을 번역·편곡·개작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36조) 다만, 수업목적에 위하여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때에는 수업받는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5조 제12항)

#### | 수업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범위’

| 종 류        | 설 명                                                                   |
|------------|-----------------------------------------------------------------------|
| 어문저작물      | 논문, 소설, 수필, 시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은 그 전체의 10%까지<br>(한 권의 저작물을 10%로 요약 및 이용 불가) |
| 음악저작물      | 음원 형태의 음악저작물은 그 전체의 20%(최대 5분 이내)까지                                   |
| 영상저작물      | 영상저작물은 그 전체의 20%(최대 15분 이내)까지                                         |
| 도형저작물      | 어떤 형태나 모양을 표현하는 저작물(지도·도면·도표·설계도·약도·해도 등)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원시코드나 목적코드의 일부분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을 뿐 공중송신 불가                             |

수업목적에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이외에 저작인접물(실연·음반·방송)도 이용할 수 있고, 외국인 저작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하는 저작물 등의 출처는 명시하여야 합니다.

#### 판례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법원의 해석

법원은 토필시험을 치른 후 응시생들에게 배포되지 않고 회수된 토필시험문제가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는 토필 시험 응시생들에게 문제지의 소지, 유출을 허용하지 아니하고서 그대로 회수함으로써 시험 문제들이 공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고, 시험이 시행된 후에 원고 자체의 판단에 따라 재사용 여부나 공개 여부, 공개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증거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제한된 범위의 응시생들이 토필 시험을 치르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공표라 할 수 없다.”라고 판결함.

서울고등법원 1995. 5. 4. 선고 93나47372 판결[손해배상(기)]

## 【참고 6】 저작권법상 ‘인용’ 및 ‘공정이용’이란?

저작권법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8조). 인용(引用)이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넣어 설명하는 데 쓰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5조의5)

### | ‘인용’을 판단하는 기준

- ① 인용 대상이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② 인용의 목적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③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주종(主從)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 ④ 피인용저작물의 출처 명시 필요

### | ‘공정한 이용’을 판단하는 기준

-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②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③ 이용된 부분이 이용된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④ 저작물의 이용이 이용된 원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물을 비상업적, 변형적(패러디 등), 공익적 또는 부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된 저작물이 사실적(역사적 사실, 시사적인 사건, 자연적 또는 인문적 현상 등)이거나 이용된 저작물이 원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낮을수록, 이용된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수록 공정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판례 저작물의 ‘인용’과 ‘공정이용’ 판단 기준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가 지문 및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된 고입 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의 평가문제를 시험이 종료된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중송신한 것이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 및 제35조의5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함.

- ① ‘인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②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함.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 저작권법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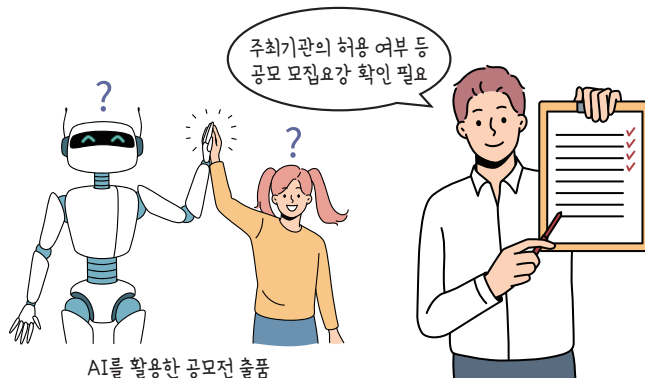
## 질문

영상 제작 UCC 공모전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영상의 일부를 생성형 AI로 제작하고자 하는데 출처만 표기하면 문제없을까요?

## 답변

UCC 공모전에 출품할 영상의 일부를 AI로 제작하였다면 출품작은 순수 창작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모전 요강에서 순수 창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AI로 제작한 영상 일부가 포함된 작품은 공모전에 출품할 수 없습니다. 출품작에 영상 일부를 AI로 제작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출처를 표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을 UCC 공모전에 출품하는 경우 접수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작품이 접수되고 해당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더라도 나중에 AI가 제작한 영상 일부가 해당 작품에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우수작의 선정은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모전은 법적으로 ‘현상광고’라고 합니다. 현상광고란 주최기관이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모한 자가 그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또한 계약 중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명칭이나 형태 등에 상관없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공모전 요강’은 이러한 약관에 해당합니다. 이에 출품자는 공모전에 출품하는 경우 요강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갖습니다.

따라서 공모전 요강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응모자는 주최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과 주최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전에 시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시 활용 가능 여부를 주최측에 먼저 확인하고 응모할 것을 권합니다. 더불어 시 서비스에 따라 생성물의 출품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시 서비스 이용약관’도 함께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 【참고 ⑦】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자신들의 의사 표시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은 한쪽 당사자의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양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동시에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채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계약 내용이 이행되었더라면 상대방(채권자)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입니다.

## 판례 계약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원고는 피고 회사(드라마제작사) 등과 32회분으로 예정된 드라마 <김수로>의 극본집필계약(이하 '이 사건 집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원고가 드라마 제작 및 방송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가 드라마 극본을 완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가 드라마 32회분 중 1회분부터 6회분까지의 드라마 극본을 작성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집필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도 자신의 기존 작업성과를 이용하지 말 것 등을 통보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집필계약의 부당 해지통보에 의한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5억 1,600만 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의 별다른 귀책사유나 계약의 해지를 정당화 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데도 이 사건 집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억9,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8913 판결 - 위약금

## 【참고 8】 공모전 규정 위반에 따른 의무와 책임은?

공모전 모집요강도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응모자가 공모전 요강에 반하여 응모하는 것은 약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약관을 위반한 응모자는 상황에 따라 주최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주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선작이나 우수작의 저작권재산권 전부를 주최자에게 귀속시키는 공모전 요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무효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판례 공모전 요강에 의한 면책 범위

소외인\* 응모자가 원고를 무단으로 촬영한 초상 사진을 피고의 ‘대한민국 관광 이미지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하고, 피고는 입선작품을 자유투어 버스 외관에 래핑하여 전시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가입 회원들로 하여금 공모전을 통하여 확보한 사진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원고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공공장소에 전시하여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는데, 피고가 공모전 요강에 “모든 응모 작품은 제3자의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입상작품의 저작권 및 배포권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라고 기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초상 사진을 이용하거나 회원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 초상권 침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 면책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가 모집요강 등을 통하여 출품자와의 관계에서 사진 저작권의 귀속 또는 피촬영자의 초상권에 관한 유의사항을 명시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까지 아울러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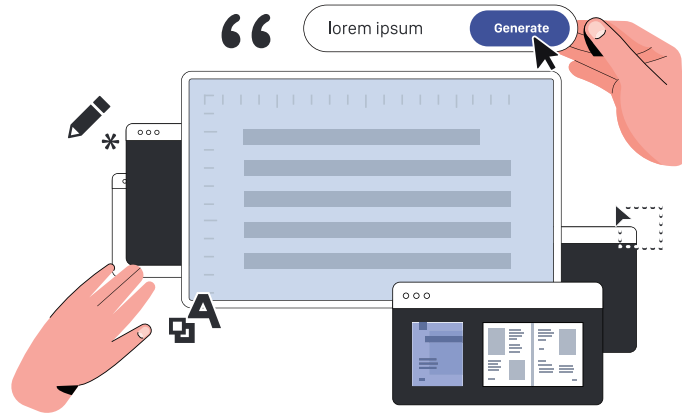
\* 소외인 :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

인천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가단232254 판결 - 손해배상(기)

Chapter

# III

**AI 활용 수업 사례**



## • Text Generative AI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스럽고 일관성 있는 텍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AI 도구입니다. 사용자의 텍스트 입력(프롬프트)에 따라 AI가 적합한 텍스트를 예측해 생성하는 방식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문장 완성, 스토리텔링까지 다양한 글쓰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AI Model

ChatGPT

Claude

Gemini

HyperCLOVA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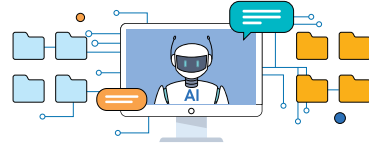
Jasper

wrtn.



## · AI-Combined Class

“  
다양한 예시 문항을  
단시간에 만들었어요!”



- 학습을 위한 예시 문항 수 부족
- 다양한 응용 학습 한계 발생



### 📢 국어수업 |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 알기

: 문장 구조를 다양하게 접하기 위해 많은 예시 문항을 직접 만들어 보자

- 학생 본인이 원하는 주제의 간단한 동화(이야기) 내용 준비
- AI를 활용하여 동화의 문장 구조를 잘못된 형태로 생성

★ 시로 생성한 어색한 문장의 동화를 학급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여  
다양한 예시 문항의 잘못된 문장을 찾아보았어요.

#### 친구와의 협력

##### 챕터 1: 새로운 시작

인수와 지인은 학교에서 친구가 되었어요.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심한 둘은 함께 재미있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며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 챕터 2: 어려운 문제

프로젝트 중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그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눴어요.  
하지만 인수는 지인에게 “함께 생각해봐요!”고  
말했어요. 둘은 다시 이야기하며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기로 했어요.

##### 챕터 3: 멋진 결과

마침내, 인수와 지인은 멋진 프로젝트를 완성했어요.  
두 친구의 협력에 대해 선생님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둘은 함께 힘을 합치니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들은 언제나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것을 즐겼답니다.

#### 어느분부터

♡ 0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그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었어요.

#### 인내와 끈기

##### 챕터 1: 도전의 시작

인수는 자전거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많이 넘어져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기로 했어요.

##### 챕터 2: 친구의 응원

인수의 친구, 지인이 그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관찰에 다시 해보렴!”하고 응원하며  
지인은 인수가 넘어질 때마다 함께 일어났어요.  
인수는 친구의 응원 덕분에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 챕터 3: 성공의 순간

드디어 인수는 자전거를 혼자서 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늘을 향해 소리치며 기쁜 그는 지인과 함께  
놀을 것 같아요.  
인수는 인내와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이제는 어떤 도전에도 자신감을 가졌답니다.

♡ 0

+ 너무 어려워서 많이 넘어져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힘들었어요.

#### 강아지는 내 친구

##### 챕터 1: 새로운 친구

아는 날, 작은 마을에 사는 인수는 숲 속에서  
길 잃은 강아지를 발견했어요.  
강아지가 두려워 보였고, 인수가 그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인수는 강아지에게 ‘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둘은 금새 친구가 되었어요.

##### 챕터 2: 함께하는 모험

복이와 인수는 매일 함께 놀며 많은 모험을 했어요.  
둘은 숲 속에서 숨어놀이를 하고, 강아지에서 놀고  
자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인수는 복이가 자신을  
지켜주는 것을 느끼며 더 큰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 챕터 3: 우정의 힘

아는 날, 인수가 나무에서 떨어지 다치게 되었어요.  
복이는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며 마을로 달려갔고,  
마을 사람들이 인수를 구해 주었고, 그 덕분에 복이는  
우사이 되어갔어요. 인수는 복이 덕분에 살아났고,  
두 친구는 서로의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어요. 이제 그들은 언제나 함께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답니다.

♡ 0

+ 강아지가 두려워 보였고, 인수가 그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 다양한 문제를 직접 만들어보고 고치는 과정에서 흥미 유발
-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해 학습 이해도 제고

※ 본 사례 수업활동에 활용된 이미지와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는 WrtN을 활용한 AI 생성물로, WrtN은 만14세 미만의 학생이 이용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 AI 프롬프트 입력

### STEP. 01

글의 주제 및 분량 등의 구체적인 명령을 작성하여 이야기 생성하기

○○○

# Prompt 입력창

- # 초등학생 1, 2학년에게 적합한 동화를 만들고 싶어
- # 동화의 주제는 협력이야
- # 크게 3개의 챕터로 된 이야기를 만들어 줄래?
- # 10개 이하의 문장으로 작성해줘

### STEP. 02

이야기의 문장 구조를 어색한 문장 형태로 재생성하기

○○○

# Prompt 입력창

- # 위의 동화에서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 또는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한 구조로 변경해서 다시 작성해줘
- # 각 챕터당 1개의 문장만 변경해줘
- # 수정된 어색한 문장은 굵은 글씨로 처리해서 보여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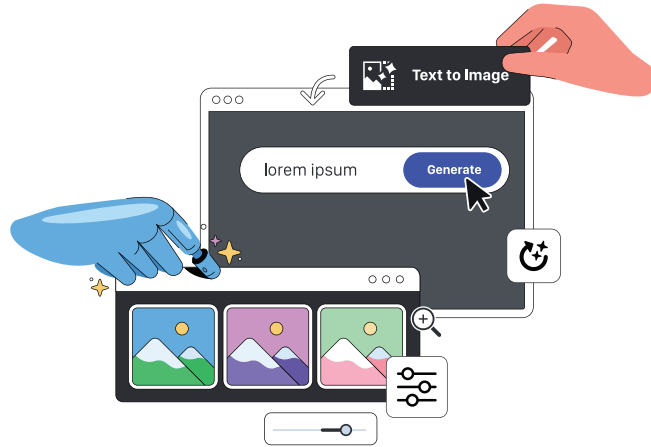
## Q&A

Q AI 생성물을 변형해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안전한가요?

A AI 생성물을 재창작하거나 변형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작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단, AI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지 않은지 확인하여야 하며, 외부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AI로 생성되었음을 명시하는 것이 저작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Image Generative AI

시각적 콘텐츠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도구입니다. 이러한 AI 도구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 색상, 레이아웃에 맞춰 다양한 디자인 시안 및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디자인 제작 및 그림 그리는 것이 서툰 사용자도 손쉽게 고품질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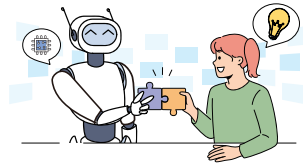
## • AI Model





## · AI-Combined Class

### “ 시각적 표현의 한계를 해결했어요!



-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표현된 미술 능력에 실망감 초래
- 그로 인해 자신의 작품을 부끄러워하는 경향 발생



#### 🔊 국어수업 비유하는 표현

: 학생 본인이 만든 시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 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생각해 보기
- AI 프롬프트에 표현하고 싶은 그림을 묘사하여 이미지 생성

★ 시로 생성한 이미지와 함께 시를 적어서 작품을 완성하고  
학급 온라인 시화전을 개최하여 친구들과 서로 작품을 공유했어요.



- 자신의 발상 표현에 대한 부담감 해소
- 표현력 상승에 따른 잃어버린 자신감 회복

※ 본 사례 수업활동에 활용된 이미지와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는 WrtN을 활용한 AI 생성물로, WrtN은 만14세 미만의 학생이 이용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 AI 프롬프트 입력

### STEP. 01

#### ☞ 텍스트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도움받기

○○○

# Prompt 입력창 ☒

- # 초등학교 3학년 또는 4학년 수준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해.
- # 다음 시에 어울리는 그림의 분위기나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줘.
- # 햇살 가득한 오후, 너와 나 나란히 앉아, 웃음과 비밀을 나누어, 우정과 비밀을 나누어, 우정이 깊어져가네, 비오는 날의 우산 아래,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 너와 나, 친구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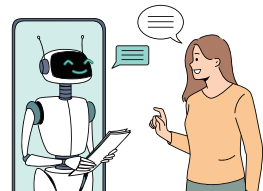
### STEP. 02

#### ☞ 원하는 이미지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이미지 생성하기

○○○

# Prompt 입력창 ☒

- #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 몇 개 그려주고 나무와 꽃들이 많은 정원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면서 비도 함께 내리는 모습을 표현해 줘.
- # 중앙에는 두 어린이가 나란히 앉아 함께 우산을 쓰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줘.
- # 한 명은 짧은 머리, 한 명은 긴 머리로 그려줘.
- # 한 친구의 머리 위에는 웃는 얼굴이 그려진 작은 말풍선을 그려 넣어 비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 줘.



## Q&A

**Q** 학생이 작성한 시를 활용하여 생성한 AI 이미지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A**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법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를 이미지화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AI 프롬프트 내용의 상당한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부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Chapter

# IV

## AI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저작권 FAQ



## AI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저작권 FAQ

Q1



### ▶ AI가 창작한 생성물은 저작권이 있나요?

**AI가 창작한 생성물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 보호하므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담고 있지 않은 AI 순수 생성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AI 생성물에 사용자가 창작성을 가미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창작적 기여 정도에 따라 사용자의 창작적 기여분에 한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 ▶ AI 생성물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될까요?

**AI 순수 생성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 생성물이 타인의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물에 해당하므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 ▶ 개인에게 허용된 AI 서비스를 수업시간에 사용해도 되나요?

**AI 서비스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AI 서비스 이용약관을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AI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개인에게만 허용된 AI를 수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더라도 AI 사용에 대한 학교나 교육청 등 교육기관이 정한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이나 규정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

Q4



### ▶ 연구대회 또는 공모전 등에 AI 생성물을 출품할 수 있나요?

**AI 서비스 이용약관 및 연구대회 또는 공모전 주최측 모집요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 이용약관 및 공모전 모집요강을 먼저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 ▶ AI 생성물 이용 시, 출처표시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AI 생성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표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도덕 및 윤리적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AI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출처표시를 권장합니다.

Q6



### ▶ AI 서비스 멤버십 구독 여부에 따라, 귀속되는 권리가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AI 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AI 서비스의 유료 또는 무료 구독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AI 생성물에 대한 소유권 등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AI 생성물에 대한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이용약관의 제한 조건, 저작권 침해 가능성, 제3자 권리 충돌 등에 따라 AI 생성물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Q7



### ▶ 학생(아동)은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나요?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이용 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AI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학생의 이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AI 모델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연령 |
|-------------------------------------------------------------------------------------------------------------------|------------------------|
|  <b>ChatGPT</b><br>(DaLL-E 통합) | 만13세~18세 미만            |
|  <b>wrtn.</b>                  | 만14세 미만                |
|  <b>Canva</b>                  | 만13세 미만                |
|  <b>Adobe Firefly</b>          | 만13세 미만                |

참고 : 생성형 AI 모델별 이용약관에 따른 연령 제한

대부분의 AI 서비스 이용약관은 만13세 미만의 아동이 AI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 하에 제한적으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작되었으며, 교육 목적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용도의 무단 복제 및 인쇄·배포를 금합니다.

발행일 2024. 12.